

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 당 법 조 문	처 분 기 준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	법 제25조제1항제1호	등록취소
2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 록기준에 미달한 때	법 제25조제1항제2호	영업정지 2월(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록취소)
3.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(법인의 임원 중 법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는 제외)	법 제25조제1항제3호	등록취소
4.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계측업무를 하도 급한 때	법 제25조제1항제4호	영업정지 2월(5년 이내 2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)
5.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	법 제25조제1항제5호	등록취소
6.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	법 제25조제1항제6호	등록취소